

무지개 (개미)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
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
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
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
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은 "책임개시
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회사가 계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 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3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 2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의 3 (회사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료"라 합니다) 중 제 1금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 또는 만기금여 ⑤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별보험료" (이하 "장해분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에 관한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발생에 2.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는 경우

1.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판기 정 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4조 (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채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5조 (계약의 무효) ①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금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 제 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금여금을 지급

②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2급 또는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 일이 되는년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제 4호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제 1항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중목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만을 드립니다.

⑦제 6항에 규정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금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금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⑧제 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금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 또는 장해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

년 장해

⑨제 6항 및 제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 제 4호의 장해금에
금의 지급한도는 우선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7조 (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을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등
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
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
니합니다.

제 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
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물류표중 제 1급의 장애 또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
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
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양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렇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는 1월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단절자를 통파하거나 청약연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자인, 약률복용을 수단으로 진
의한 취소를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이상 지냈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제10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

아니합니다.

도약을 조파한 경우에는 그 조파가입일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미 넘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
③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경우는 제외)

제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필로 서명한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외)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지 아니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냈을 때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①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수익자는 제 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면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연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 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보험료수급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급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급방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급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급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 14 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 21 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 (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 하여 드립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른 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 (약관대출이율에 내세워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⑥이 보험에 대하여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은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론 범위내 (예정이론이 정기예금이론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 무는 제 1조 제 3항, 제 2조, 제 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제16조 (보험금을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 16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제 6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표시표” 참조)

⑤회사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7조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背書)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

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산정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래에 향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9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을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인체는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년부터 반환일까지 정 기여금이용토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인체는

제25조 (보험보증금의 지급보장)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 이 아닌 개인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금이 1인당 5천만원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4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3조 (판할위원회)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판례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frac{1}{2} \left(\frac{1}{2} + \frac{1}{2} \right) = \frac{1}{2}$

71 Kf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1}{4} \times \frac{1}{4} = \frac{1}{16}$: $\frac{1}{4} \times \frac{1}{4} = \frac{1}{16}$
 $\frac{1}{16} \times \frac{1}{16} = \frac{1}{256}$: $\frac{1}{16} \times \frac{1}{16} = \frac{1}{256}$

[illegible]

(별표)

해양수산부 예산서

(여자)

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층	10년	남양도청토	2,610	5,220	15,660	26,100	52,200	-
	만기	환	금	0	1,112	10,189	21,071	52,200
	20년	남양도청토	1,410	2,820	8,460	14,100	28,200	42,300
	만기	환	금	0	3,213	8,479	21,152	36,474
	60세	남양도청토	1,410	2,820	8,460	14,100	28,200	42,300
	만기	환	금	0	3,213	8,479	21,152	36,474
1층	10년	남양도청토	2,850	5,700	17,100	28,500	57,000	-
	만기	환	금	0	1,461	11,281	23,029	57,000
	20년	남양도청토	1,530	3,060	9,180	15,300	30,600	45,900
	만기	환	금	0	3,555	9,093	22,652	39,282
	60세	남양도청토	1,530	3,060	9,180	15,300	30,600	45,900
	만기	환	금	0	3,555	9,093	22,652	39,282
합		6개월	0	0	3,555	9,093	22,652	61,200

(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금 여 명	지 금 사 유	지 금 금 액
만기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1호)	만기에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금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2호)	재해이외의 원인 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제 1급 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3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1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배액 2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배액 3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8배액 4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 5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배액 6종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배액

금 여 명	장해금여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4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 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 3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4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5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 6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지 금 사 유	지 금 사 유	지 금 사 유	지 금 사 유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 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판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판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판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분 류 방 무	분 류 번 호
10. 의학적 및 내과적 치료증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물의 수력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물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응인에 의한 물의의 사고	E 900 - E 909
14. 인수, 전식 및 이물에 의한 물의의 사고	E 910 - E 915
15. 기타 물의의 사고	E 916 - E 928
16. 치표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19. 물의인간 고의인간 불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된 질병	

(별표 2)

강제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정신장애	해
제1급	1. 두 손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팔 또는 척어머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당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부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당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위 7가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위 7가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위 11가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있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있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있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있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팔 또는 척추마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능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부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능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있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있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있었을 때

음	문	신	제	장	해
제 5 문	1. 한 판의 3대판전중 2판전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2. 한 다리의 3대판전중 2판전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번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표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제 6 문	1. 한 판의 3대판전중 1판전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2. 한 다리의 3대판전중 1판전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단졌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 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다른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형화된 문구>

1. "피생간호"

환자의 간호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인사생활 등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피생트를
인사생활 등작에 관한 불평을 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 없음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단,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단,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밥 또는 썰어먹는 기능을 없음 것"

가. "밥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없음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

- 1) 밥과 소리를 기증해로서 구순음 (□, ㅁ, ㅂ, ㅅ), 지성음 (ㄴ, ㄷ, ㄹ) , 구개음 (ㄱ, ㅋ), 후두음 (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중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상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프로 측정한 것이 균관하게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자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거리에서 보물의 막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학의 방법에 따른 길이 60cm 이하 (정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하의

8. "정력의 뚜렷한 자해"

든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의 길이 80cm 이하 (정력검사단위) 이상 (정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를 각각 a, b, c, d 테스트 (정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정력상실의 정도

7. "정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은 것"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자해를 영구히 당긴 것"
경우를 말한다.

음 중 2 종류 이상의 반음기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판파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지설음, 구개음, 후두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자해를 영구히 당긴 것"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자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음이나 유음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히 잃은 것"

없을 경우 또는 손가력의 증수지점판전 또는 근위지점판전을
손가력의 원위지점판전 (첫째 손가력은 판전류의 1/2) 이상을
나. "손가력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없을 것을 말한다.
첫째 손가력은 지점판전, 기타의 손가력은 근위지점판전이 사용
가. "손가력을 잃은 것"

13. "손가력의 장애"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좌우목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중부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목뼈가 완전 고정된 경우 또는 가슴뼈 이하가 전후목하기,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운동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의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하지 않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판다리 각각의 3대판전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11. "판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운동을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는 문반판전,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전이 불가능한 경
마비 또는 판다리 각각의 3대판전 (팔은 어깨판전, 팔꿈치, 손목, 디스
판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판다리의 완전운동

10. "판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각 음인부위라 한다.

판, 누 다리, 한 판과 한 다리, 10순가락 또는 반가락을 각 3군의 8 또는 제 4군의 12의 자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

마. 자해음군분류표 중 제 1군의 5, 6, 7, 8, 9, 제 2군의 1, 2, 3, 제

란. 척추에 대하여는 무뎀이하를 모두 음인부위라 한다.

음인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자해에 대하여는 누 눈 또는 누 귀를 각각

음반이하)를 모두 음인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음반판정이하(반가락, 반음이하, 무플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음인부위라 한다.

가. 한 판에 대하여는 어깨판정이하(순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15. 신체의 음인부위

경우를 말한다.

첫째반가락은 지질간판(이)이 고정되고 그 회분이 불가능한

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증축지질판정 또는 근위지질판정 (

첫째반가락은 만절골의 1/2이상, 그 외 반가락은 원위지질간판

나. “반가락을 완전연구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반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가. “반가락을 잃은 것”

14. “반가락의 자해”

경우를 말한다.

(첫째순가락은 지질간판(이)이 고정되고 그 회분이 불가능한

무지개 (彩虹)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금,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물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선) ①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 피보험자 및 주 피보험자의 후계자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인 중 피보험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중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중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보험기간중 중피보험자가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중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중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중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은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

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

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 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

파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 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

의 장해상태가 원후 중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후적등본 또는 주
민등본등본에서 제적된 때에는 이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의 2 (회사가 제정한 보험안내장등과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모집파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
영국, 영연소 및 대리점 포함) 제각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계약발생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하거
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
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 년반기 정
기예금(이률) (이하 "정기예금"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5조 (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3.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1.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금여 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제 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어느

②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무효로 합니다.

제 6조 (계약의 무효) ①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③계약자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책임은 연대 (連帶) 로 합니다.

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⑦제 6항에 규정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
해급여금을 수급자에게 드립니다.

하여 두 중복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
⑤제 1항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로 인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180 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3호, 제 4호 또는 제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제
⑤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경우에는 180 일이 되는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
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 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④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
다.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
③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금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치회이후의 보험료
②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분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4.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

제 9조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발생표준 제 1

드립니다.

②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중피보험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금의 지급한도는 우선하여 주피보험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③제 6항 및 제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 제 4호의 장해금에

년 장해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여금의 지급

발생한 장해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거나 또는 그 이전에

것으로 보고 제 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금여금이 지급된

시 제 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

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

⑧제 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금여금을 감한 차액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인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를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금여금을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

나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
해야환급금을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반환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렇지 아니합니다.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을 해친 경우와 계약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해친 경우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
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원금을 간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
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양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 지났거나 또는

계약갱신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직업 직업 또는 직종은 제
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개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급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급방법에 따라 납입기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 있습니다.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는 1월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인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 의학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 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

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입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
년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
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 (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
제1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지단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②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를 새로운 납입기간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제15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 15 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
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 22 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
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 (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 하여 드립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인의 다
금납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 (약관대출이
용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를 합산
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
한 모든 채무액을 빼 금액을 조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
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⑥이 보험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은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효력상실 (效力喪失) 되었을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합니다.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제18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 17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3. 보험증권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1. 청구서 (회사양식)

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다.

무는 제 1조 제 3항, 제 3조, 제 4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내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에서 회사
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
따라 계약의 부활 (復活) 른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 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출금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제 7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표시표” 참조)

⑤회사는 만기금여금의 지출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
터 3일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만기금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년의 다음날로 부
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비에 따라 제 7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제 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
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
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래에 항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금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2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인출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가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0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주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주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보험보증금의 지급보장)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이 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5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해양수산부 예산서

기준
보통가임금액 : 10만원
가임연령 : 40세
남입보통 : 전가임남
보통 : 전가임남
보통 : 전가임남

(주피보통자-남자)

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층	10년	남입보통	4,626	9,252	27,756	46,260	92,520	-
	만기	환-금	570	4,140	19,736	38,019	92,520	-
	20년	남입보통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만기	환-금	0	731	8,741	18,141	42,710	72,604
	60세	남입보통	2,796	5,592	16,776	27,960	55,920	83,880
	만기	환-금	0	731	8,741	18,141	42,710	72,604
4층	10년	남입보통	5,370	10,740	32,220	53,700	107,400	-
	만기	환-금	1,078	5,156	23,022	43,561	107,400	-
	20년	남입보통	3,162	6,324	18,972	31,620	63,240	94,860
	만기	환-금	0	1,028	9,674	19,817	46,885	80,699
	60세	남입보통	3,162	6,324	18,972	31,620	63,240	94,860
	만기	환-금	0	1,028	9,674	19,817	46,885	80,699
10층	10년	남입보통	9,252	18,504	55,512	92,520	185,040	-
	만기	환-금	1,078	5,156	23,022	43,561	107,400	-
	20년	남입보통	4,626	9,252	27,756	46,260	92,520	138,780
	만기	환-금	0	1,028	9,674	19,817	46,885	80,699
	60세	남입보통	4,626	9,252	27,756	46,260	92,520	138,780
	만기	환-금	0	1,028	9,674	19,817	46,885	80,699

(주피보원자-역자)

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층	10년	남입보원포	4,512	9,024	27,072	45,120	90,240	-
	관	관	535	4,069	19,588	37,613	90,240	-
	20년	남입보원포	2,694	5,388	16,164	26,940	53,880	80,820
	관	관	0	792	8,894	18,340	43,025	72,496
	60세	남입보원포	2,694	5,388	16,164	26,940	53,880	80,820
	관	관	0	792	8,894	18,340	43,025	72,496
1층	10년	남입보원포	5,082	10,164	30,492	50,820	101,640	-
	관	관	948	4,836	22,184	42,267	101,640	-
	20년	남입보원포	2,970	5,940	17,820	29,700	59,400	89,100
	관	관	0	1,012	9,645	19,714	46,443	78,949
	60세	남입보원포	2,970	5,940	17,820	29,700	59,400	89,100
	관	관	0	1,012	9,645	19,714	46,443	78,949
합계		관	0	1,012	9,645	19,714	46,443	78,949
		관	0	1,012	9,645	19,714	46,443	78,949

(원주) 해안관공문예시포

보합국의 지분기중표

구분	요목	지분사유	주피보합자		지분금액
			주피보합자	증피보합자	
만기보합금	만기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1호)	만기에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합금의 전액	-	
	사망보합금 또는 제 1급장해보합금	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사망보합금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피보합자 보합액의 1/2 해당액		
	장해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2호)				
장해사망보합금	제 1급 장해보합금	제 1급 장해사망보합금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사망보합금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4배액 2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6배액 3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8배액 4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10배액 5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20배액 6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30배액	주피보합자 보합액의 1/2 해당액	
	장해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3호)				
	장해사망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4호)				
장해사망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4호)	제 2급 장해보합금	제 2급 장해사망보합금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사망보합금 제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70% 3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50% 4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30% 5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15% 6층 : 계약보합가입금액의 10%	주피보합자 보합액의 1/2 해당액	
	장해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5호)				
	장해사망보합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6호)				

무지개보형 개인형의 (별표3) 과

자 해 은 문 공 불 표

(별표3)

무지개보형 개인형의 (별표2) 와

태양이 되는 료의 사

(별표2)